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소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31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. 12.

발 의 자 : 이소영 · 이규민 · 김성환
신정훈 · 이용빈 · 양어원영
윤건영 · 위성곤 · 김정호
강득구 · 민형배 · 이광재
김남국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환경 규제의 강화로, 탄소 배출은 산업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할 ‘신(新)무역장벽’으로 대두되고 있음. 유럽연합(EU)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더불어,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주요 정책으로 언급해 온 탄소 무역장벽제도는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에 의존하는 한국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.

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%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‘RE100’ 캠페인에는 현재 구글, 애플, BMW 등 전 세계 280여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, 이 기업들은 국내 협력사들에게까지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. IT업체인 애플은 2030년까지 협력사들까지 재생에너지 100% 사용을 요구하는 ‘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’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이미 70개 이상의 제조 협력사가 100%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

한 상황임. 그런데 2020년 12월 발간된 영국 더클라이밋그룹(The Climate Group)의 'RE100 연례보고서'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을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지적했으며, 이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저해하고 한국 기업의 국제적 시장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음.

이러한 글로벌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, 국내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스스로 수요를 감축하고, 직접 또는 인근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산업환경 마련이 필요함.

특히, 다수의 기업체가 한데 모여 집적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, 여러 기업체들을 연계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용이하며, 산업단지 내의 공장 지붕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적극 활용한다면 입주기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규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임.

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의21제1항).

법률 제 호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59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21제1항에 제1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4.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1759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</p> <p>제45조의21(사업)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/p> <p>1. ~ 11의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12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법률 제1759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</p> <p>제45조의21(사업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11의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의4.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</u></p> <p>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